#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0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박홍배·김성환·김한규

민병덕 • 한준호 • 정진욱

김현정 · 김준형 · 민형배

문대림 • 이수진 • 이연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 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가 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함.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저공해운행지역

의 여건상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가 소재한 사업자가 저공해자동차 구매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경유자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49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저공해자동차의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는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같다)에 걸쳐 있는 때에는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시·도지사가 지정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해당시·군·구를 관할하는시·도지사가 공동으로지정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공해운 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등에 관한 사항

-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 3.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
- 4.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인구 수, 교통량 및 지역적·산업적 특성
- 5. 그 밖에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저 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의 위치 변경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 및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의3(저공해운행지역의 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
  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
  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저공해운행지역의
  여건상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
  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구매를 하는 자가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운행 지역에서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하 는 자가 경유자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를 해당 목적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 운행지역의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및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제4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도지사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 3.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 </u>	
	· 공해운행지역의 지
정 등)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
<u>장·군수·</u>	• 구청장(자치구의 구
<u>청장을 밀</u>	날한다. 이하 같다)은
<u> </u>	동차의 보급을 촉진하
고 대기환	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독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	공해운행지역으로 지
<u>정할 수 9</u>	있다. 이 경우 저공해
	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 이상의 시·군·구
	말한다. 이하 이 조
	<u> </u>
	대에는 해당 시·군·
	<u>할하는 시·도지사가</u>
	물 이상의 시·도에
	경우에는 해당 시· 관할하는 시·도지사
	로 지정한다.
	<u>고 가 6년의.</u> [지사 또는 시장·군]
	상은 제1항에 따라 저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
	상 지역에 대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
   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
   용총량 등에 관한 사항
-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 3.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온

   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
- 4.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인구 수, 교통량 및 지역적・산업적 특성
- 5. 그 밖에 대기환경 보전 및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의 위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할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저공해운행지역 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지정 요건 및 지정·변경·해

<신 설>

 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의3(저공해운행지역의 운 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운 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수· 구청장이 해당 저공해운행지역 의 여건상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 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3 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구

매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구매를 하는 자가 저공해운 행지역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 해운행지역에서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으로 경유자 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경유자 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 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 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 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의 대기오염도 의 상시 측정 및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관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 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u>정한다.</u>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
를 운행한 자
4
<u>시·도지사</u> , 시장·군수·

구청장이 -----